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비행안전 제1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물 제한〉

■ 강선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716호)

2026. 3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문 성 환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※ 참고자료	6
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5 제1호	6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강선영 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10. 27.
3. 회부연월일 : 2025. 10. 2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(장애제거구역)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,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1호).

Ⅲ. 검토의견

-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군사시설의 기준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제1항제1호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(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)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구역에서 <u>군사시설</u> (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)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. 다만,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(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)의 이륙·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	1. ----- <u>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은 비행안전 제1구역¹⁾에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고,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통해 도로 및 그 부속물 또는 지하 매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²⁾ 동 법 시행령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

1)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별표 1

1. 전술항공작전기지

① 제1구역(장애제거구역)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안의 구역으로 한다.

2. 지원항공작전기지

① 제1구역(장애제거구역)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이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안의 구역으로 한다.

2)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(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)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(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)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. 다만,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(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)의 이륙·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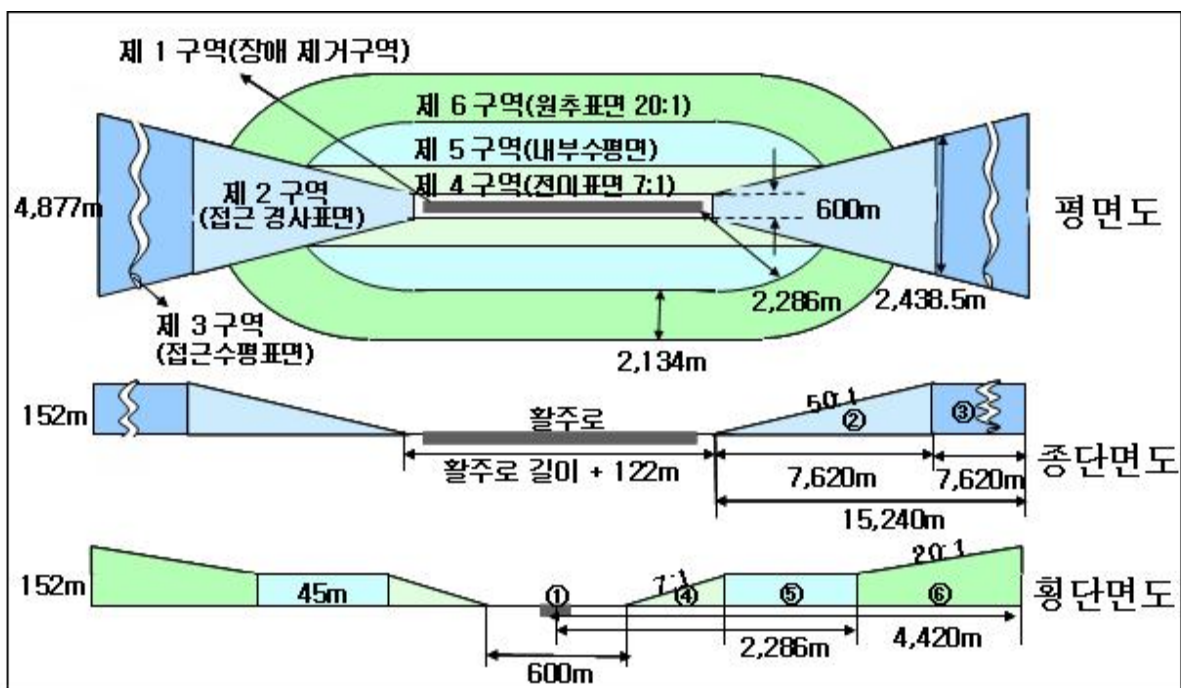
가.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,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

나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

기준을 마련하고 있음.³⁾

-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활주로 바로 바깥 구역인 비행 안전 제1구역의 지표면에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임.

[비행안전구역 개념도]



- 그런데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설치⁴⁾로 인해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, 개정안은 비행 안전 제1구역에는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 설치만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.

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

3) [참고자료 1] 참조

4) 현재 경계초소, 체력시설(풋살장 등), 종교시설(사찰) 등이 설치되어 있음.

- 다만, 개정안의 ‘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’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안전 1구역내 설치 가능한 군사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, ‘군사시설’을 ‘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’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09

※ 참고자료

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5 제1호

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(제10조 관련)

1.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가. 활주로 및 유도로, 주기장, 계류장,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
 - 나. 항행안전시설
 - 1) 무지향표지시설(NDB), 전방향표지시설(VOR), 거리측정시설(DME), 계기착륙시설(ILS/MSL), 레이더접근관제시설(RAPCON), 전술항행표지시설(TACAN)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
 - 2)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
 - 3)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
 - 다. 활주로 관리반(Runway Supervisory unit)
 - 라. 풍향송신장비, 운고측정기,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
 - 마. 관제탑
 - 바. 항공기 초과저지망
 - 사. 분사방풍벽
 - 아.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
 - 자.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.